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6나12563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6나1256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2 선고 2015가단5063117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 피항소인 1. F

2. G

변론 종결 2016. 8. 12.

판결 선고 2016. 9. 30.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2. 선고 2015가단5063117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제1심 공동피고 A, B, C, D, E와 공동하여 30,896,597원 중,

가. 피고 F는 29,752,2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8.부터 2016. 9.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G은 피고 F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금원 중 8,936,8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8.부터

2016. 9.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F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F가, 원고와 피고 G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그 중 70%를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G이 각 부담한다.

5. 제2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1) 제1심 공동피고 A은 30,896,597원 및 그 중 29,752,293원에 대하여 2012. 7. 28.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4. 29.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B, C, D, E은 위 A과 연대하여 위 (1)항 기재 돈 중 29,752,2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8.부터 소장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B, C, E, D(이하 '제1심 공동피고'라는 용어는 생략한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제1심 공동피고 A을 만나 허위 재직 서류 및 허위 주택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2010. 12.경 피고 F에게 근로자전세자금대출 용도로 사용될 주택 임대차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제공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그 승낙을 받아, 피고 F의 아들인 피고 G 소유의 '서울 강북구 J 1동 3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에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B, C 등은 2012. 12.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부동산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편취를 공모한 E과 만나 피고 G 소유의 '서울 강북구 J 1동 3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허위로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기간 2011. 1. 1.부터 2013. 1. 1.까지, 임대인 피고 G, 임차인 A으로 기재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갑 7-2,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 작성하였고, A은 2010. 12. 27. 우리은행 송파역 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1. 1. 5.경 A과 사이에, A이 우리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나.항 전세자금 대출금채무를 보증원금 3,780만 원, 보증기한 2013. 1. 7.까지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A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 및 기타 모든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정하여져 있고, 그 지연손해금 비율은 보증채무 이행 다음날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로 규정되어 있다.

라. 우리은행은 2011. 1. 5.경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행한 주택금융신용보증서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등에 기초하여 A에게 4,200만 원을 주택전세자금으로 대출하면서, 임대인 피고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대출금을 송금하여 주었고, 위 대출금은 송금되자마자 피고 F 등 공범을 통해 수표 등으로 인출되어 피고 F 및 A, B, C, D, E 등이 분배받았다(특히 그 중 10만 원권 수표 8장은 피고 F의 국민은행계좌로 다시 입금되었다).

마. 한편 원고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행에 앞선 2011. 1. 4.경, 피고 G은 아직 A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관한 계약금조차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A이 실제로 입주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 측 조사원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A이 임대보증금 6,000만 원에 임대기간 2011. 1. 1.부터 2013. 1.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갑7-1)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사실확인서에는 "본 확인서는 귀하(피고 G)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함에 따라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임대인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G은 이 사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일 훨씬 이전인 2010. 7. 12.부터 당시 변론 종결일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주택에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주택을 누구에게도 임대한 사실이 없었다.

바. A이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우리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2. 7. 27. 우리은행에게 대출원리금 39,273,69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사. 한편 피고 F 등이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 사기에 관한 손해배상금의 일부 변제로 원고에게 2013. 6. 28. 금 9,450,000원, 2013. 7. 8. 금 20,453원을 각 공탁하였고, 원고가 이를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대위변제금에 충당하였는데, 현재 대위변제원금 잔액은 29,752,293원이다. 한편 위 대위변제금 외에 별도로 A이 원고에게 변제해야 할 확정손해금은 1,144,304원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은행 및 성북구 수유1동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F: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F는 A 등과 이 사건 불법전세자금 대출을 공모하였고, 이 사건 불법 전세자금대출에 필수적인 전세계약서 작성에 관여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 이 사건 불법 전세자금대출금 중 일부를 공범들로부터 분배받은 점, 피고 F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할 것인데(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F에 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피고 F가 그 자백한 내용을 부인하는 바람에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아니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된 것에 불과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 F의 가담사실이 인정되는 금융자료들이 증거로 제출된 점, 피고 F는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불법행위에 관한 내용이 적힌 원고의 항소이유서 등을 수령하였음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제1심에서는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F는 이 사건 공범들과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G: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러한 불법행위의 방조는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를 포함하며, 이 경우에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다23555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G은 자신이 출공 거주하고 있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실제 A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지도 아니하였고,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갑7-1)에 '임차인이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함에 따라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임대인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어, 전세자금 대출을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이용되리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단지 피고 F가 시키는 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고, 우리은행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대출금에 관하여도 공범들이 그대로 인출하여 가도록 방치한 과실로 피고 A 등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G 역시 A를 비롯한 공범들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대위변제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1) 피고 F의 손해배상 범위 피고 F는 고의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 전부에 대한 책임이 있다.
2) 피고 G의 손해배상 범위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따라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까지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에 관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는 피고 F 및 제1심 공동피고들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고, 피고 G은 A이 실제 임차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피고 F의 말만 듣고 우리은행에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과실로 방조한 것일 뿐, 피고가 그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높은 점, ② 원고나 우리은행도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 또는 그 주택금융신용보증에 앞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만 확인하였을 뿐, 실제로 그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는지 등에 관한 사후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 등에 관한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은 피고 F 등 공범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 G이 위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나오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G의 배상책임은 원고의 손해액의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A과 연대하여 30,896,597원(=대위변제금 29,752,293원, 확정손해금 1,144,304원) 중 피고 F는 그 중 29,752,293원, 피고 G은 그 중 8,936,897원(=대위변제금 29,752,293 × 30%)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2. 7. 2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9. 3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성수

판사강동원

판사문현정